

국제장기상거래계약에서의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관한 연구: 원계약 상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을 중심으로 *

윤주영
순천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A Study on the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of International Long Term Commercial Contracts: Focusing on the Contracts without the Renegotiating Clauses

Joo-Young Yoon^a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8 September 2020, Revised 26 October 2020, Accepted 29 October 2020

Abstract

In case of international long-term transactions, there are various risks of economic change of circumstances including skyrocketing price increase and shortage of raw material, as well as force majeure in a general sense. Nevertheless, pretty many of international long-term commercial contracts do not include the provisions of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possibility of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depends mainly on the applicable law. Namely, it may be possible or not, according to choice of law. The reason is that national laws have nuances each other, and most of national courts are traditionally reluctant to accept hardship. and also, provisions of international uniform law (CISG) has ambiguity and inflexibility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f change of circumstances.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comparatively the doctrines and provisions related to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of contracts of the most representative countries such as England, U.S.A., France, Germany as well as provisions CISG and soft law such as PICC. By doing so, the author makes clear which laws of instruments is more flexible or acceptable in allowing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of long-term commercial contracts, and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inclusion of express terms by using other alternative supplementing clauses, as a best solution for settling the problems of legal uncertainty of contract in relation to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Keywords: Law,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Hardship, CISG, PICC, Applicable Law

JEL Classifications: F10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Education for Emerging Scholars of the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2020.3.1 ~ 2020.12.31.)'

^a First Author, E-mail: yjytrade@naver.com

© 2020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오늘날 해외시장에서는 물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서비스공급거래, 기술이전거래,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 투자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국제건설프로젝트계약, 원유개발 등 국제천연자원개발계약은 10~30년에 걸친 장기계약이 일반적이며, 건당 거래금액도 보통 수십억 또는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국제장기상거래는 기대이익이 큰 반면 여러 가지 지정학적·산업적·정치적인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과거의 예를 보면 피투자국들은 간혹 주권우선을 내세워 장기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국유화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대비해 당사자들은 장기계약상 계약의 안정성(stability of contract)을 보증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발생 시 계약의 종결 및 당사자들의 면책, 또는 계약이행기간의 연기 등에 관한 조항도 국제장기상거래계약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합법적인 기대이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장기계약의 성격상 불가항력조항을 포함시키더라도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장기거래의 경우 수익률의 감소, 당해지역의 지질변화, 노동비의 상승, 조세부담의 증가, 피투자국의 환경보호기준이나 국제환경협약상의 기준에 일치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초 기대했던 투자이익을 확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장기상거래에서는 원 계약체결 이후 예견불능이나 통제불능의 본질적인 사정변경(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 계약상에 재협상(renegotiation) 및 계약변경(adaptation)에 관한 조항들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를 통하여 이른바 계약의 융통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국제장기상거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

능 시 계약의 종결 또는 이행연기조항만을 두고 이른바 하드쉽(hardship)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중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재협상 및 계약변경관련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재협상 및 계약변경의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계약에 재협상 및 계약변경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계약이 어느 국가의 법률에 적용받느냐에 따라 재협상 및 계약변경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극심한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재협상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준거법으로 선택되는 각국의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 및 국제원칙의 법리와 규정상 차이점, 상충점, 그리고 모호성이 존재하여 재협상 및 계약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legal uncertainty)으로 인하여 국제장기상거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기대이익의 확보는커녕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는 하드쉽 등 사정변경법리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에 치우쳐 왔으며, 그로 인하여 법적효과 중의 하나인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연구는 국외에서도 비교적 적은 편이고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장기상거래에서 원계약상 재협상 및 계약변경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재협상 및 계약변경문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계약의 재협상 및 변경에 관한 보통법계와 대륙법계 국가의 관련 법리 및 규정, 그리고 국제협약 및 국제원칙상의 규정들을 문헌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차이점과 문제점들을 명확히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장기상거래계약 실무자들이 계약초안 시 재협상 및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중요사항들을 제시하는데 주된 연구목적들을 두고 있다.

II. 국제장기상거래계약의 재협상과 계약변경에 관한 이론적 배경

기본적으로 국제상거래계약의 재협상 및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는 주된 논거는 계약의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원칙(principle of good faith), 계약자유원칙, 사정변경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해서는 이후 각장에서 재협상 및 가격변경법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본 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계약자유원칙과 사정변경원칙만을 논하기로 한다.

1. 계약자유원칙

국제상거래에서 계약의 재협상 및 그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은 본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고전적 법원칙(classical principle of law) 중의 하나인 계약자유원칙(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에 기초를 두고 있다(Hamad, 2017).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계약자유원칙은 인간의 개체성(individuality)과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절대시하는 이념적 원칙으로서, 고전적 계약법에서는 계약당사자들의 의지(will)를 아무런 방해 없이 실현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원칙은 동시에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라는 관념이 강조됨으로써 실질적인 내용상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조건 선택의 자유, 그리고 계약방식 선택의 자유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Atiya, 1981).

따라서 국제상거래 상 재협상과 그에 따른 계약변경은 계약자유원칙 중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 선택조건 선택의 자유원칙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국제상거래에서 당사자들은 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특정조항을 수정·변경하기 위하여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 계약에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당사자들이 계약이행기간 중 합의하여 재협상 및 계약변경을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재협상을 위한 합의와 그에 따른 계약변경은 당사자들의 자유이며, 공공질서와 도덕성을 해치지 않는 한 국가 또는 기타의 제3자가 이를 방해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당사자들의 의지(will)와 합의를 최우선시하는 고전적 계약법원칙뿐만 아니라 현대계약법원칙에서도 불변의 원칙이다(Hamad, 2017; Yoon Chung - Weon, 2004).

결국 이상과 같은 법원칙에 따라 재협상을 위한 합의는 일종의 조건부약속으로서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로부터 당해 계약을 보존하기 위한 계약의 실제적 일부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재협상과 관련한 합의도 계약을 재검토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이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자체적으로 강행능력을 갖는다(Hamad, 2017).

2. 사정변경원칙

계약의 이행과 불이행, 그리고 계약의 재협상과 변경에 관련해서는 이른바 계약 엄밀준수원칙(Pacta Sunt Servanda)과 사정변경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원칙이 쌍벽을 이루며 정립되어 왔다.

먼저 계약엄밀준수원칙을 의미하는 Pacta Sunt Servanda는 본래 라틴어로서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로마시대의 금언이다. 이는 계약의 신성개념(concept of the sanctity of contract)을 절대시 하였던 고대의 종교적 개념으로서 계약신성의 원칙, 계약절대원칙(absolute principle of contract), 또는 계약충실준수원칙 등으로 일컬어져 왔다. 다수 학자들은 이러한 계약엄밀준수원칙이 로마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로마제국뿐만 아니라 그 보다 오래전부터 지구상의 거의 모든 종교와 문화에서 유지되어 온 보편적인 관념으로 인식하고 있다(Mazzacano, 2011; Wehberg 1959; Yoon Joo - Young, 2017). 즉 고대사회에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서 신(God)이 함께 참여하고 당해 계약의 보증인(guarantor)이 된다고 믿었다.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후발적으로 예견하지 못한 이행곤란(hardship)이나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과 관계없이 체결한 계약이행을 신이 보장한다고 믿었으며, 계약(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처벌을 받는 죄라고 여겼다.

그 후 중세시대 초기에 기독교 세력이 점차 강력해지면서 계약신성의 관념은 당시 교회법 학자(cononist lawyer)들에 의하여 수 세기에 걸쳐 더욱 철저하게 고수되었다.

이와 같이 고대로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강한 종교적 관념 하에 정립된 계약엄밀준수원칙은 그 후에도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인류의 행동기준을 제공하였다(Mazzacano, 2011; Yoon Joo-Young, 2017). 즉 나폴레옹 법전(제1134조) 등 그리고 구체적인 입장에서는 상이하지만 유럽국가의 민법은 물론 Anglo-Saxon 보통법과 이슬람교 법전인 Sharià 등의 기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UNIDROIT원칙(PICC)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도 원칙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즉 주요국의 법전이나 국제규범에서는 계약체결 이후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나 프러스트레이션 등과 같이 사전에 예견불가능하고 통제불능한 사태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impossible)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계약에 대한 재협상이나 계약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늘날에 와서 계약엄밀준수원칙은 경제이론적 측면에서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들이 주장하는 계약위험배분이론(theory of risk allocation)에 바탕을 두고 계약체결 시 이미 약속자(promisor)에게 불예견사태위험과 그에 따른 손실위험이 배분되었다면 약속자는 당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Jenkins, 2015).

한편 사정변경원칙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Clausula Rebus Sic Stantibus는 “계약은 해당 계약이 체결될 당시와 똑같은 사정일 때에 한하여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정변경원칙은 전술한 계약엄밀준수원칙과는 달리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어떠한 이행불능,

프러스트레이션, 기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면책되거나 재협상 및 계약변경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Kull, 2001).

따라서 사정변경원칙은 사실상 계약엄밀준수원칙과 서로 충돌하며 계약상 약속의 구속성을 침식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원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계약엄밀준수원칙과 함께 오늘날 거의 모든 법제에서 인정된 원칙이 되었다(Mazzacano, 2011).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14세기부터 계약엄밀준수원칙에 대한 관념이 점차 바뀌기 시작하였다. 즉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등을 비롯한 상당수 교회법학자들은 계약엄밀준수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혀져 있다(Bederman, 1988).

그 후 17세기에 들어서 사정변경원칙은 점차 대다수 교회법학자들에 의하여 옹호되기 시작하여 계약상의 약속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계약은 예견되지 않고 과도한 변화에 적합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7세기는 지배적인 정치상황에 따라 동원칙에 대해 호의적인 기간이었다. 다만 동원칙의 위상은 사법 분야에서는 강력하지 못했던 반면 국제법 분야에서 최초로 존중받게 되었다. 한편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와서는 사정변경원칙은 당시 고전적 계약법(classical contract law), 자유주의 경제이념, 그리고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 등이 유럽사회의 우세한 가치로 인식됨에 따라 호의적인 원칙이 되지 못했다. 특히 영국을 주축으로 하는 보통법계에서는 동원칙이 그다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Kull, 2001).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원칙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당시 발생한 경제적·정치적 문제와 장기계약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채택됨으로써 현대계약법상 면책법리가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다루는 계약의 재협상 및 변경의 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즉 비록 사정변경의 명칭과 세부적인 요건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소 달리하면서도 대륙법계인 프랑스와 독일의 민법, 미국의 통

일상법전(UCC), 그리고 UNIDROIT 원칙(PICC)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상거래 모델조항에서도 불가항력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인한 면책과 함께 하드ship에 따른 사정변경 시 재협상 및 계약변경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Ⅲ. 재협상과 계약변경에 관한 주요국의 접근방법

국제상거래계약의 재협상과 계약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 시 어느 국가의 법 또는 어느 국제규범을 따르기로 하느냐 즉 준거법(applicable law)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준거법이 당해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과 사정변경의 효과 자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해 계약에서 재협상조항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재협상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주요 국내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준거법의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경우 중재인들은 당해 계약에서 당사자들의 본래 의도와 함께 계약을 규율하는 준거법을 적용하게 된다(Al-Emadi, 2012; Kröll, 2004).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계약의 재협상과 변경에 관한 영국, 미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 주요국의 법규정을 개략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영국법

영국에서는 19세기 중엽까지 계약엄밀준수 원칙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즉 계약당사자들은 체결된 계약의 이행이 극히 부담스러운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가장 잘 뒷받침한 판례가 널리 알려진 1647년 *Paradine v. Jane* 사건(1642~1646년 동안 영국 내전 당시 토지임대료 지급분쟁)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200년 후 이른바 1863년 *Taylor v. Caldwell* 사건(뮤직홀 화재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른바 “계약목적좌절(frustration of purpose)법리가 정립됨으로써 계약엄밀준수원칙이 이전에 비해 완화되는 전환점을 맞이

하였다.

영국의 계약목적좌절법리에 따르면 계약목적좌절은 계약이행이 물리적으로(physically) 또는 법적으로(legally)으로 불가능(impossible)해 지거나, 이행이 가능하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과실이 없이(without fault) 당초 계약 체결 당시와는 매우 다른 후발적 사태(supervening event)가 발생한 경우, 법적관점에서 당해 계약은 종료됨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계약이행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때 단순한 하드ship인 경우에는 계약상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국 법원은 계약목적좌절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드ship에 의한 본질적인 사정변경 시 계약목적좌절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Al-Emadi, 2012; Al Qurashi, 2005). 그런 점에서 동 법리는 후술하는 프랑스의 불가항력법리 보다는 융통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들이 동 법리를 매우 좁게 해석해 왔다는 사실이다(Mckendrick, 1995a; Al Qurashi 2005). 물론 영국의 경우 법원이 종전의 엄격한 입장을 보다 융통성 있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영국에서 최고의 사법권을 가진 의회의 상원(House of Lords)의 저항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 법원들은 미국과는 달리 상업적 실행불능의 법리를 일정하지 않으며, 계약목적좌절법리는 대부분 소비자계약(consumer contract)에 적용하고 상업계약(commercial contract)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귀결은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실제의 상황 하에서 계약목적이 좌절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던 영국의 판례들의 검토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법원의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신의성실(good faith)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Baranauskas et. al., 2009).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재협상과 계약변경을 요구해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요컨대, 영국 법원은 전통적으로 계약목적좌절법리를 적용한 이후에도 원상회복 restitution)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협상을 명령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해 왔다. 다만 영국 법원은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계약을 해석(interpretation)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Al-Emadi, 2012; Al Qurashi, 2005; Schmitthoff, 1980; Zaccaria, 2004). 이에 따라 앞서 지적한 1863년 Taylor v. Caldwell 사건은 물론 그 이후 1903년 Krell v. Henry 사건(에드워드 7세 즉위식 연기관련 사건) 등 일련의 판례는 재협상 및 계약변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단지 후발적 사태로 인해 당사자들의 과실이 없이 계약목적이 좌절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계약을 종결시킨 것이다.

또한 영국 법원들은 20세기에 들어서도 계약 목적좌절법리를 매우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Davis Contractors Ltd. v. Fareham Urban District Council 사건(주택건설 사업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예기치 않은 노동력 부족, 악천후 그리고 막대한 비용증가가 발생하여 계약목적 좌절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Suez 운하봉쇄 조치에 따라 매도인의 물품매매가 좌절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the situation fundamentally different)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계약목적좌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와는 달리 지극히 예외적인 하나의 판결이 있다. 즉 Staffordshire Area Health Authority v. Staffordshire Staffs Waterworks Co 사건을 보면 당사자 간에 1919년 병원에 고정가격으로 수도물 공급을 계약했으나 그 후 50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엄청난 계약이행 비용부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50년 전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황이 근본적으로 크게 변경되었다”고 언급하며, 당사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그 이후 새로운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Baranauskas et. al., 2009). 그러나 이러한 판례는 매우 희귀한 판례일 뿐이며, 영국 법원이 계약목적좌절법리 해석상 융통성이나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관한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 법원에게 계약목적좌절법리를 이행불능의 경우뿐

만 아니라 상업적 실행불능과 하드쉽의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융통성이 있는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해야 된다고 비판하였다. 예컨대 Schmitthoff 교수는 법원이 계약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현대적인 무역법과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법의 심각한 결점이라고 지적하였다(Schmitthoff, 1980). Treitel 교수와 Atiyah 교수 역시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계약관계를 종결하는 것은 계약이 변경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허용하는 것보다 만족스런 것이 아니며, 타협이 종종 최선이라고 언급하였다(Atiyah, 1995; Zaccaria, 2004).

2. 미국법

미국은 영국과 함께 보통법계에 속하면서 이행불능법리가 적용될과 동시에 사정변경 시의 무면제에 관해서는 영국보다 관대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른바 상업적 실행불능(commercial impracticability)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통일상법전(UCC) 제2편 제615조(section 2-615) 및 계약에 대한 진술서 제2판(2nd Restatement of Contract)에서 구현되어 있다.

실행불능법리에 따르면 극심한 원료부족사태 또는 주된 공급처의 조업정지와 같은 계약이행상의 과도한 부담(excessive burden)이 발생한 경우 계약이행이 면제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Al Qurashi, 2005). 물론 UCC 제2편 615조에 대한 공식적인 코멘트에 따르면 단지 가격인상만으로는 상업적 실행불능을 주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가격인상은 그 정도가 극심하고 불합리한(extreme and unreasonable)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태가 합의된 계약이행의 본질을 변경할 정도로 중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UCC와 재진술서에 밝혀져 있는 하드쉽 상황발생 시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들은 실행불능의 개념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예컨대 1966년 US v. Wegematic Corporation 사건, 1979년 Eastern Air Lines v. Gulf Oil Corp. 사건, 1979년

Missouri Public Service Company v. Peabody Coal Company 사건, 1984년 Northern Illinois Gas Co v. Energy Co-operative Inc 사건, 1980년 Iowa Electric Light & Power Co v. Atlas Corp 사건, 1988년 Florida Power & Light Co v. Westinghouse Electric Corp 사건 등은 주로 원재료가격 또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들이지만 법원이 실행불능을 불인정한 판례들이다(Zaccaria, 2004).

한편 이와는 달리 미국 법원들은 계약체결 시 사정변화가 예기되지 않았고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구속될 경우 관련 프로젝트 자체나 시공사가 파산지경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계약조건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법은 상당수 법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계약인 경우 극도로 심한 정도의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Al Qurashi, 2005). 계약을 조정할 대표적인 판례가 1980년 Aluminum Company of America (ALCOA) v. Essex Group Inc 사건이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적으로 알루미늄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격의 극심한 상승은 공급자인 원고가 극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격을 조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인정하고, 기존의 가격산정방식 대신 새로운 가격산정방식을 제시하였다. 동 판결에서 법원은 우선 당사자들이 계약조건을 재협상하되 만약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적 해결방법에 의하여 계약변경을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ALCOA 사건의 판결은 미국의 판례상 사실상 혁명적인 접근이었다. 그러나 동 판결 이후 그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단지 2건의 다른 판결에서 판사가 이를 옹호한 적이 있을 뿐 ALCOA 사건의 룰(rule)은 더 이상 확대적용되지 못했다(Urbe, 2011).

이상과 같이 미국법과 미국 법원의 사정변경에 대한 입장을 종합해 보면, 영국법에 비하여 하드쉽의 상황(요건)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법원에게 형평법상 유효한 계약변경(equitable adaptation) 또는 계약의 재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융통성이 많다(Zaccaria, 2004).

다만 미국 법원들은 지금까지 학계로부터 사정변경 시 UCC 제1편 제203조의 신의성실원칙(principle of good faith)에 의거하여 계약당사자 중 의무부담이 있는 측이 계약변경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종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Zaccaria, 2004). 그것이 지금까지 미국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임이 분명하다.

3. 프랑스법

프랑스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나폴레옹법전이래 불가항력(force majeure) 법리에 의거하여 계약엄밀준수원칙 또는 계약신성원칙이 엄격하게 뒷받침되어 왔다. 즉 계약이행면제는 계약상 그러지 않기로 하는(반대되는) 조항이 없다면 주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불능(impossibility)인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되어 왔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불가항력은 계약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예견불능(unforeseeable)하고 저항할 수 없는(irresistible) 사태를 말한다. 만약 당사자가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태발생이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과실(fault)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법 하에서는 단순한 사정변경은 계약이행으로부터 구제받는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Al-Emadi, 2012; Al Qurashi,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엄격한 입장은 프랑스 민법 제1134조에 포함된 신의성실(good faith) 및 형평성(equity)의 요건에 의하여 지탱되어 왔다.

물론 프랑스 법원들은 불가항력법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이행이 크게 부담스럽거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상황인 경우에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해온 바 있다. 그러한 시도 중에는 계약조건변경에 의한 구제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1876년 Canal de Craponne 사건이다. 동 사건을 보면 1567년 정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개서비스(irrigation services)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무려 300년이라는 장기간이 지난 후 고정된 서비스공급요금이 절대적으로 부적합해지자 계약조건변경을 위해 소송이 제기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법원에서는 변경된 경제적 여건에 서비스요금을 증액시키는 계약 변경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 후 프랑스 최고법원(Cour de cassation)이 동 판결을 뒤집고 계약엄밀준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결국 계약변경은 무산되었다(Baranauskas et. al., 2009).

한편 프랑스에서는 불가항력법리와는 별도로 사정변경과 관련하여 이른바 불예견사태(imprévision; unforeseen circumstances)의 법리가 발전되어 왔다.

불예견론은 세계1차대전 당시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급격한 경제적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하여 민간기업과 정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체결된 행정계약(administrative contracts)에만 적용되는 법리이었다(Al - Emadi, 2012; Al Qurashi, 2005; Rimke, 2001; Yoon Joo - Young, 2017). 동 법리에 따르면 당해 계약의 경제적 균형(economic equilibrium of the contracts)이 예기치 않았던 사정변경에 의하여 심각하게 악영향을 받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동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uditu, 2011). 이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판례가 1916년 Gaz de Bordeaux 사건(Bordeaux 시와 민간회사 간의 가스 및 전기 공급계약 변경사건)이다. 불예견론에서는 경제적 균형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가 최종적이고 구제불능인(final and irremedial)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계약의 종결을 허용한다. 따라서 동 이론은 특정국가 또는 국유회사와 계약이 체결되는 국제원유계약 등 국제장기상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Al Qurashi, 2005). 그러나 동 법리는 프랑스 민법 내에서 법전화(codification)되지 않은 채 그동안 적용되어옴으로써 이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동 법리는 마침내 지난 2016년 프랑스가 약 220년 만에 민법 제1195조를 개정하면서 법전화되는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프랑스는 불예견법리를 민법 제1195조에 추가함으로써 종전의 법원판례를 사법(private law)에 통합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경우 후술하는 PICC와

같이 불예견사정과 불가항력 간의 성격상 서로 다른 경계를 그어 놓고 있다. 즉 불가항력은 종전과 같이 엄격한 이행불능(strict impossibility)의 상황에 적용하여 그 결과 당사자를 면책시킴과 동시에 당해 계약을 일시중지 또는 종료시키게 된다. 반면 불예견사정은 i) 계약의 균형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ii) 합리적으로 예견불능인 사정의 변화로 계약이 심히 불균형을 가져오는 경우 iii) 계약이행이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경우, 재협상을 통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프랑스법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정과 법의 효과(law's effects)를 완화시킴으로써 다른 국내법의 영역보다 융통성을 부여한 셈이다. 특히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 규정된 상업적 실행불능의 법리가 단지 물품매매(sale of goods)에만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제1995조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Handy, 2019).

4. 독일법

전통적으로 독일 역시 계약법에서 단지 이행불능법리(doctrine of impossibility; Umöglichkeit)만을 인정해왔다. 그에 따라 이행불능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당해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당사자가 면책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엄밀준수원칙이 적용되었다. 또한 독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전통적인 이행불능의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법원의 계약변경을 시도한 바 있으나 강력한 비판을 받아 무산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독일법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1차대전이 일어난 직후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격변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와 관련하여 재난적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들은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전통적인 이행불능의 개념을 매우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법원들은 계약이행을 계속하면 어느 일방에게 불합리하고 예기치 않은 하드ship을 발생하는 경우에도 독일민법 제275(1)조 §275(1)

Table 1. 주요국의 국내법상 재협상 및 계약변경의 접근방법 비교

국가	관련 법리 및 법조항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대한 입장(수용성 여하)	대표적 사례(판례)
영국	계약목적좌절 (Frustration)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재협상을 강제하거나 직접 계약변경을 할 권리가 없음. -주요국 중 가장 융통성이 없음. ○ 법원은 계약목적좌절법리를 매우 좁게 해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ell v. Henry(1903) 2KB740(CA) 등 계약목적좌절법리에 의거한 구제판결, 즉 피고인의 면책 또는 원고의 배상 등 판결은 다수 있음. -그러나 법원이 직접 계약변경을 명령한 판례는 없음.
미국	상업적실행불능 (Commercial Impracticability) 법리 -UCC 제2편 615조 및 계약에 대한 진술서 2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도 UCC 제2편 제616조에서는 재협상 및 계약변경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실행불능법리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음. -특히 주목할 점은 대다수 판례에서 임금상승, 원자재 가격상승 또는 건설비용증가로 인한 어려움이나 비용변동의 경우 재협상 및 가격변경을 불인정해 왔음. ○ 다만 극히 일부 법원의 판사가 재량으로 재협상 및 계약변경을 명령한 경우가 1개 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 법원은 영국 법원보다는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보다 융통적인 면이 있으나, 인정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이 임금상승 또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해 계약변경을 불인정한 판례는 상당 수 있음 (본문 참조). ○ 법원이 계약변경을 명령한 판례(유일한 판례임): Aluminum Co. of America v. Essex Group Inc. (1980)
	① 불가항력(Force Majeure)법리 -민법 제1147조 및 제11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항력 발생 시 계약이 종결되고 이행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계약엄밀준수원칙을 가장 엄격하게 뒷받침해 옴. -따라서 재협상 및 계약변경의 여지가 전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재협상 및 계약변경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법리임.
프랑스	② 불예견론 (Imprévision)법리 -민법 제119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0년 동안 행정계약(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계약)에서 별도로 불예견법리에 의거하여 사정변경에 따라 경제적 균형이 심각하게 악영향을 받는 사태 발생 시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다만 그동안 법전화 되지는 않고 행정규칙에 의거하여 적용해 옴). ○ 그러나 2016년 민법 제1195조를 개정하여 상기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협상 및 계약변경을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수용하게 되었음. -따라서 향후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크게 주목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이 불예견법리에 의거 계약변경을 수용한 판례: Cour de Cassation (최고법원)의 Cass. civ. Mar. 6 1876, D.P.L. (1876) ○ 법원이 계약변경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E.D.F. v. Shell Française (1978)
독일	행위기초상실 (Wegfall de Geschäftgrundlage) 법리 -민법제275(1)조, 제242조, 제3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찌부터 사정변경원칙을 도입한 행위기초상실법리를 민법에 도입해왔음. -계약과 관련한 사정이 계약의 본질적인 불균형을 가져온 경우 등 계약의 기초가 붕괴된 경우 법원은 재협상을 통한 계약변경 또는 계약종결을 명령할 수 있음(다만 단순한 사정변경의 경우는 불인정함). -주요국 중 가장 융통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이 계약조건변경을 명령한 대표적 판례 -Vigogne -Spinner 사건(RG 03 February 1922, RGZ 103,328) -Bohrhammerfall (pneumatic drill) 사건 (BGH 16 January 1953, MDR 1953, 282)

BGB를 적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면제하였다. 물론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거센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1921년 외르트만(Paul Oertmann)의 매우 정교한 계약기초이론(theory of contractual foundation;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또는 행위기초상실이론(theory of collapse of contractual foundation; 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이 주장되면서 사정변경 원칙이 굳게 정립되기 시작하였다(Chung, 2017). 동 이론에 따르면 만일 기 체결된 계약과 관련한 사정이 계약의 본질적인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을 가져옴과 동시에 계약체결 시 예기치 못하고 수용하지 않았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할 경우 당해 계약은 계약의 기초를 상실한 것이며, 따라서 법원은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독일 법원은 단순한 위험변화와 심각하지 않은 계약이행의 부담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협상된 거래의 조건변경을 정당화 하지는 않는다. 또한 독일의 경우 계약의 기초상실로 인한 법적 효과(legal consequence)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신의성실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며,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협상에 실패할 경우 법원은 개입자(interventionist)로서 당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Baranauskas et. al., 2009; Dimatteo, 2015; Al Qurashi, 2005; Rimke, 2001; Suditu, 2011; Yoon Joo · Young, 2017).

이러한 법원칙에 의거하여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극심한 독일 통화의 구매력 감소(80%의 감소)를 이유로 이른바 1922년 Vigogne-Spinnerei 사건(방적공장 소유권이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법원은 이때 최초로 계약변경을 해줌으로써 독일 계약법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Chung, 2017). 즉 독일 법원들은 그 이후 상당수 사정변경 관련 소송에서 행위기초상실법리를 적용하여 계약변경을 해왔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제1차 세계대전 당시와 같이 재난적 경제상황과 동·서독의 분리 등 여러 가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자 법원들은 각종 소송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해주었다.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이 1953년 공기압축드릴사건(Pneumatic Drill case)이다.

결국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에 논쟁거리가 될 수 없이 절대적이었던 계약 엄밀준수원칙(계약신성원칙)이 더 이상 고수되지 않게 되었으며, 대신 형평법원칙(equity principle)이 점차 법원에게 설득력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법원들은 오늘날까지 상당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242조(§242 BGB)에 소중하게 규정된 신의성실요구를 주된 바탕으로 하여 행위기초상실법리를 판결의 논거로 삼고 있다. 특히 독일 의회는 이러한 법원의 입장과 학계의 의견을 감안하여 마침내 이전까지 관습법(customary law)의 일부를 이루어 오던 행위기초상실법리를 민법 제313조 (§313 BGB)에 도입함으로써 법전화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더 이상 논란의 여지없이 계약의 취소보다는 계약의 조정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Chung, 2017).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의 경우 이른바 “ergänzende Vertragsauslegung” 즉 부족사항을 보충하는 계약에 대한 해석(an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which fills gaps)과 행위기초상실이론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에 따르면 계약상 부족사항이 있어야 하며, 법원의 직무는 당해 계약의 부족사항을 채워줌으로써 만약 어떤 사태가 예상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했을 것이냐에 대한 해석을 해주어야 한다. 반면 후자에 따르면 법원은 당해 계약의 부족사항을 채워 줄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자체를 종료시킬 수도 있다(Rimke, 2001). 이상과 같은 행위기초상실의 법리는 독일이 통일이 된 이후에도 민법개정을 통하여 갱신되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수많은 법원판결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Bauanauskas et. al., 2009).

IV. 계약의 재협상과 변경에 관한 국제협약 및 원칙상의 규정

본 장에서는 전술한 주요국의 국내법에 이어서 국제상거래계약상 재협상 및 계약변경과 관련한 몇 가지 다국적 계약 관련 협약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유럽계약법원칙상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관한 규정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다국적기업 관련 협약상의 관련 규정

앞서 언급한 사정변경원칙(principle or doctrine of *rebus sic stantibus* / *change of circumstances*)은 현대사회에서 국제법상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왔다. 동 원칙은 계약에 사정변경조항을 포함시켰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념이다(Al Qurashi, 2005).

본질적인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에 관한 규칙은 우선 1962년 채택되어 1980년에 발효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y of 1969)의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협약 제62조에 규정된 중대한 사정변경의 법적효과를 보면 불리한 처지에 놓인 당사자(disadvantaged party)는 조약상 의무의 철회 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2조의 내용은 신중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주된 이유는 사정변경원칙의 과도한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국제계약의 엄밀준수에 관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함이다(Al-Emadi, 2012; Horn, 1985; Al Qurashi, 2005).

이와 같이 제62조 표현이 매우 신중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1973년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판결에서 엿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9년 비엔나협약은 규정상 본래 국가 간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orn의 주장에 의하면 제62조는 다국적계약(transnational contract) 또는 민간

기업 간의 계약에도 해당되는 일반적인 법원칙의 강력한 논거가 된다는 것이다(Horn, 1985). 또한 Chowdhury와 Sornarajah 등 다수 학자들은 역시 계약체결 시 존재했던 계약상의 균형(contractual equilibrium)이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매우 심하게 변동된 경우 국제투자계약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Chowdhury, 1986; Sornarajah, 1988). 이러한 견해는 개발도상국들이 주도한 유엔총회결의(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SOC: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이른바 “다국적기업의 행동에 관한 초안법(Draft Code of Conduc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역시 재협상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 법에서는 다국적기업은 협박(duress) 또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명확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상황이 본질적으로 바뀌었을 경우(where the conditions upon which the contract was based have fundamentally changed) 다국적기업은 계약상 관련 조항이 없이도 상대방인 정부와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동 법에서 재협상은 오로지 당해 계약이 적용을 받는 준거법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협상의 관념은 OPEC 회원국들도 옹호하고 있다. 즉 산유국들은 원유채굴권계약(concession agreement)에서 재협상의 합법성을 지지하고 그러한 입장을 1968년 “원유정책성명서(Declaratory Statement of Petroleum Policy of 1968)”의 핵심내용으로 삼았다(Al Qurashi, 2005).

그러나 아직은 다국적계약의 재협상에 관한 의무에 관하여 완전한 의견합치가 되지는 않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천연자원의 발굴을 위한 특정국가와 외국의 투자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서 계약신성원칙이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원칙에 의하여 무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그러한 계약신성원칙은 개발도상국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서방국가들은 계약신성원칙과 대외투

자의 보호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계약신성에 대한 옹호론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정변경과 같은 계약법 상의 관념을 적용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보다는 개발도상국들이 주권과 새로운 경제정책만을 앞세워 일반적으로 계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재협상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주장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본질적인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있을 경우 다국적기업들과 정부와의 투자계약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AI Qurashi, 2005).

2. CISG 및 PICC 상의 관련 규정

1) CISG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라 칭함)은 1980년에 UN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과거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가 주도하여 작성했던 유체동산의 국제매매에 관한 통일법(UNIS)와 유체동산의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ULF)의 결점들을 보완하여 1980년 발표시킨 국제제정법이다(Rimke, 2001; Yoon Joo - Young, 2017). CISG는 국제물품계약에만 적용되는 특징이 있지만, 국제물품매매거래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계약일 경우 당연히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나 하드쉽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그 법리는 물론 계약의 재협상과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CISG의 적용문제를 연구주제로 삼아왔다.

우선 CISG는 제79조에서 이른바 이행장애(impedi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당사자 간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제79조를 요약하면 제79조 1항에서 계약불이행 당사자가 면책을 받기 위한 성립요건으로서 ① 이행장애가 발생하고 ② 그것이 계약이행을 불가능(impossible)하게 해야 한다. ③ 이행장애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이어야 하며, ④ 계약체결 당시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어야 한다. ⑤ 이행장애의 결과를 회피 또는 극복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9조 5항에서 규정된 이행장애의 면책효과를 보면 면책될 경우에 한하여 이행장애를 주장하는 당사자(claiming party)를 단지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the exemption only protects the claiming party from liability for damages). 따라서 이행장애를 주장하지 않는 당사자(non-claiming party)는 계속적으로 대금감액(제50조), 계약이행강요권리(제46조 및 제62조), 계약취소권리(제49조 및 제64조), 그리고 손해배상액과는 별도의 이자청구권리(제78조) 등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또는 대체이행(substituted performance)을 요구할 권리가 유지된다(Dimatteo, 2015; Rimke, 2001; Yoon Joo - Young, 2017).

그러나 CISG는 이행장애의 개념, 면책요건 및 면책효과, 그리고 실제 적용상의 모호성 또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다수 학자들에 의하여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CISG에서는 특별히 하드쉽 규정 또는 사정변경 규정뿐만 아니라 불가항력 규정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하드쉽 규정이 배제됨으로써 하드쉽 상황이 CISG 제79조에 포함되느냐 여부를 놓고 그동안 여러 학자들 간에 많은 찬반논리가 전개되어 왔다. 또한 주요국의 법원에서도 포함여부에 대해 양분된 판례를 보여 왔다(Arroyo, 2012; Dimatteo, 2015; Rimke, 2001; Schwenzler, 2008).

이와 같이 초기 CISG을 초안하는 과정에서 부터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학계의 논란이 된 주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Honnald 교수와 같은 CISG 초안자들이 전술한 주요국의 법리에서 볼 수 있는 force majeure, impévision, unmöglichkeit(이행불능), 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 frustration 또는 impracticability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주요국의 법률제도상 개념의 표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impediment” 또는 “exemption”과 같은 탄력적인 용어(elastic words)를 사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초안자들은 동 협약에 참가하는 여러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단일의 독립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그

렇지 않을 경우 각국의 법률제도 차이로 인해 협상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협상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결과 불행하게도 서로 다른 법률적 해석을 하게 되는 폭넓은 영역 또는 여지를 남겨 놓게 되었다(Zaccaria, 2004).

사실 CISG의 초안작업 당시 하드쉽을 제79조의 면책요건으로 포함하느냐 여부는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진 문제이었다. 특히 CISG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CISG를 적용하는 경우 하드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다. 제7조 2항에서는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 중에 명백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협약의 기초가 되어 있는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는 국제사법원칙(rul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에 의거하여 적용되는 법률(the law applicable)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약 극심하게 변경된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매우 부담스러워진 경우 CISG에서 적용상의 갭(gap)이 있다면 하드쉽 문제는 국내법 규칙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CISG의 적용역사를 보면 그러한 적용상의 갭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배제하였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방안으로 하드쉽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여러 국가들이 국내법상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법을 통일화하는데 있어서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수 논자들이 수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Rimke, 2001; Zaccaria, 2004).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1977년에 계약 체결이후 예기치 못했던 특별한 사태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과도하게 어렵거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에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악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적절한 계약수정 또는 계약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동 제안은 채택되지 못했다(Rimke, 2001). 이와 더불어 노르웨이 대표단은 계약불이행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커다란 경제적 불균형, 예컨대 큰 폭의 이행비용 증가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고집할 경우 명백하게 불합리하다면, 영구적으로

면책된다는 조항을 협약원문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 역시 배제되었다. 배제된 이유는 노르웨이 대표단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전술한 프랑스의 불예견법리 또는 영국의 계약목적좌절법리가 CISG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Zaccaria, 2004).

CISG 적용을 통한 하드쉽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서 종종 제7조 1항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 of good faith)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제7조 1항에서는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상의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 및 국제무역거래상 신의성실의 준수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 조항에 근거하여 Schlechtriem 교수와 Bonell 교수 등은 계약이행에 따른 비용이 불합리하게 증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disadvantaged party)는 계약상의 의무를 면하게 하거나 사정변경에 따른 재협상과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chlechtriem, 1998; Zaccaria, 2004). 즉 이들의 주장은 경제적 조건의 중요한 변화(a material change in economic conditions)의 결과로서 후발적, 예견불능의 이행장애(a subsequent, unforeseeable impediment)가 발생한 경우 이른바 “희생의 제한(limit of sacrifice)”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Rimke 2000).

그러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Tallon 교수와 Bianca 교수 등은 신의성실원칙이 협약의 명시적 조항을 해석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Schlechtriem 교수 등이 주장하는 해결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논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만약 신의성실의 관념이 imprévision 법리의 법률적 기초로 간주된다면 제7조 1항에 명시된 국제적 조화가 위태롭게 되고 협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Tallon et. al., 1987; Zaccaria, 2004).

특히 이들은 신의성실원칙은 순수하게 국제무역거래가 촉진되게 하기 위한 원칙이며, 협약 특히 면책의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제79조

5항의 명시적 규정을 우회(무시)하기 위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의성실의 관념은 실제적으로 무역거래 당사자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Rimke, 2001).

결국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한 하드쉽 상황에서의 면책 또는 재협상 및 계약변경은 본래 CISG 초안자들의 의도를 벗어남으로써 수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쟁만 무성할 뿐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어 온 과정에서 지금까지 실제로 CISG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문제를 다룬 판례는 매우 적다. 그 중에서 CISG의 적용범위에서 불가항등에 따른 하드쉽을 배제한 법원판결 또는 중재판정은 1993년 이탈리아 법원의 Nuova Fucinatti S.P.A. v. Fondmetal International A.B 사건, 1994년 독일 법원의 Vital Berry Marketing NV v. Dira - Frost NV 사건, 1995년 독일 법원의 Iron Molybdenum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후술하는 PICC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CISG에 의거하여 하드쉽을 인정하고 법원이 계약을 변경한 판례는 유일하게 2009년 벨기에 최고법원의 Scafom International BV v. Lorraine Tubes S.A.S 사건이다(Crystal et al., 2010; Dimatteo, 2015; Handy, 2019; Klepac, 2017; Uribe, 2011; Veneziano, 2010). 벨기에 최고법원의 판례가 나온 직후 하드쉽을 CISG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정론자들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벨기에 최고법원은 계약체결 후 튜브가격이 갑자기 70% 상승한 것은 매도인 입장에서서는 극복할 수 없는 하드쉽인 반면 매수인 입장에서 뜻밖의 횡재이기 때문에 하드쉽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최고법원은 CISG상 내부적 갭(internal gap)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특정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대신 PICC를 CISG의 일반원칙으로 삼아 당사자 간에 재협상과 계약변경을 명령하였다.

2) PICC

전술한 바와 같이 CISG는 국제무역계약 분야의 제정법 성격을 가진 통일법으로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SG는 그 자체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 융통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미보통법과 대륙법의 법리가 절충되는 과정에서 또는 어느 쪽의 법리에 치우치지 않은 독립성과 초국가적 성격을 살리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모호한 조항 또는 갭(gap)이 내포된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가 지난 1994년 최초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1994)”을 초안하여 공식 승인이 된 바 있고 그 후 2004년과 2010년 3차례 개정·보완된 동 원칙(이하 PICC라고 칭함)이 제정되었다. 특히 PICC는 계약의 자유원칙, 무역관습에 대한 개방성, 가능한 한 계약을 유지해주려는 이른바 favor contractus, 신의성실과 공정한 거래원칙의 준수, 매매협상 및 계약의 실제적 측면에서 부당성의 배제 등을 기본관념으로 갖고 제정되었다(Bonell, 2005). 따라서 PICC는 비록 연성법(soft law)에 해당하지만 전술한 CISG보다 훨씬 방대한 조항을 포함함과 동시에 조항해석상 모호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

이상의 기본관념을 바탕으로 하여 PICC는 다음과 같은 기능 또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PICC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계약에 적용하는 법규칙(rule of law) 즉 준거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즉 당사자들이 계약을 PICC에 준거하기로 합의하거나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또는 상관습법(lex mercatoria) 등에 의하여 규율되기를 합의하거나, 당사자들이 의한 법의 선택(choice of law)이 없는 경우 PICC는 준거법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때 PICC가 어느 계약의 준거법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내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하게 된다(Oh Won - Suk et al., 2005; Yoon Joo - Young, 2017). 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PICC를 준거법으로 삼기로 합의한

경우는 물론이지만 당사자들이 계약상 PICC 적용에 관해 아무런 명시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중재판정부에서 PICC를 적용하는 다수의 판례가 있다(Bonell, 2002).

예컨대 Bonell의 연구에서는 다수의 ICC 중재판정을 예로 들어 계약에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PICC를 준거법으로 적용한 점을 지적하였다. 1997년 홍콩 수출상과 러시아 무역공사 간의 분쟁사건(ICC Award No.116), 1996년 베트남의 쌀 수출상과 프랑스 및 네덜란드 바이어 간의 분쟁사건(ICC Award No.8502), 1999년 미국 회사와 아랍 정부기관과의 무역분쟁사건(ICC Award No.7110), 1996년 미국회사와 아랍 정부 간의 분쟁(ICC Award No.7375), 1997년 미국 회사와 이란 항공사 간의 분쟁(ICC Award No.7365)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Bonell 2002).

또한 이상과 같은 Bonell의 연구와는 달리 Agro는 2011년 UNILEX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사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각국의 중재판정부와 법원이 PICC를 준거법으로 인정한 건수와 특정국가의 국내법상에 규정된 해결방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규칙들과 일치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PICC가 인용된 건수를 집계하였다(Agro, 2011). 이에 따르면 PICC는 준거법으로 적용한 중재판정은 55건, 법원판결은 6건이었다. 또한 PICC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이라고 인용된 중재판정은 33건, 법원판결은 25건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들은 여러 경우를 합산한 결과이다. 예컨대 i)분쟁 발생시 당사자들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PICC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ii)중재판정부가 재량으로 PICC를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iii)계약에 “법의 일반원칙, 상관습법, 기타 유사한 법원칙을 따르기로 한 경우 iv)법적으로 유효한 선택법 조항(valid choice - of - law clause)이 없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통계를 보면 Bonell이 주장한 바와 같이 비록 CISG가 국제통일법으로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들이 있거나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그 이유는 CISG 제1조(적용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계약

당사자 중 적어도 어느 일방의 영업소가 CISG의 비계약국 내에 있거나 또는 국제사법 관련 기관의 법원칙상 비계약국의 국내법을 적용하게 되면 PICC를 준거법으로 선택하거나 인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예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상의 준거법 기능의 가능여부와는 별도로 PICC는 CISG 등의 국제 통일법 및 국내법의 해석 및 보충기능을 하게 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CISG 상 적용상의 갭(gap)의 존재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imke, 2001). 다만 PICC 전문 제6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국내법의 정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시장경제체제 이행국가뿐만 아니라 일부 선진국들 중 국내법 조항의 불완전성 또는 모호성이 있을 경우 PICC가 그에 대한 해석 및 보충기능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은 Agro의 분석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의 분석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하여 PICC가 준거법으로서 적용되는 국내법의 해석 및 보충기능을 한 건수는 중재판정의 경우 27건, 법원판결의 경우 49건에 달한다.

특히 PICC는 태생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지 않고 가능한 한 유지해주려는 기본관념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PICC는 이러한 관념과 더불어 전술한 두 가지 주된 기능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제상거래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7.1.7조에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을 규정함과 동시에 별도로 제6.2.1조~6.2.3조에 하드쉽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제6.2.1조에서는 “계약의 이행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보다 부담스러운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당사자는 하드쉽에 관한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조항은 당사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한 손실이 있더라도 구속력 있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 본래 성격상 구속력이 있다고 해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계약의 균형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즉 하드쉽 상황의 경우 예외라는 점

을 암시하고 있다. 즉 본 조항은 PICC 제1.3조에 규정된 계약엄밀준수원칙의 예외로서 앞서 설명한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Huh Jae - chang, 2005; Yoon Joo - Young, 2017; Zaccaria, 2004).

제6.2.2조에서는 하드쉽의 정의와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하드쉽은 당사자의 이행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의도했던 것보다 수령하는 이행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계약의 균형(형평성)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when the occurrence of events fundamentally alters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라고 기본적인 정의를 하고, 동시에 주된 성립요건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에서는 당사자 간의 불균형의 정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모든 전문가들은 법률학자들이 표현하는 바와 같이 “본질적인(fundamental) 또는 실제로 심각한(really serious) 변화”로서 본래의 상황과 새롭게 발생한 상황 간에 극도로 심각한 불균형(extremely serious disparity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new conditions)이라고 해석하고 있다(Zaccaria, 2004).

아울러 본 조의 후반부에서는 이상에서 기술한 하드쉽의 기본적인 정의와 요건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적인 성립요건은 i)사태가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거나 알게 되었을 것 ii)계약체결 시 불리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the disadvantaged party)가 사태를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을 것 iii)동 사태가 불리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것일 것 iv)사태의 위험이 불리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에 의하여 인수되지 않았을 것 등이다.

한편 제6.2.3조에서는 하드쉽에 관하여 4가지 절차적 규칙 및 실체적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하드쉽 사태가 발생한 경우 불리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의 재협상요구와 재협상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행위는 PICC 제17조 및 제

5.3조에 각각 명시된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고 상호협력해야 할 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는 하드쉽 상황이 진실로 발생했는지를 정직하게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책략적으로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두 당사자들은 재협상 과정에서 건설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Rimke, 2001; Zaccaria, 2004).

둘째, 재협상을 요구한 경우라도 불리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을 유보할 수 없다.

셋째, 만약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 또는 중재인에 호소할 수 있다.

넷째, 만약 법원이나 중재인이 하드쉽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경우, 합리적이거나 i)지정된 기일과 조건을 붙여 계약을 종료(termination) 시키거나 ii)계약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해 계약을 변경(adaptation)할 수 있다. 다만 합리성의 기준(criteria of reasonableness)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3자인 법원이나 중재인이 당해 계약의 종료와 계약변경 중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되느냐 또는 다른 어떤 해결책을 채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시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공식적인 설명을 보면 다른 선택안을 택할 수 있다. 예컨대 당사자들의 재협상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다시 한 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그 밖에 계약상 원래의 조건을 그대로 놓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하드쉽 조항의 목적이 어떤 해결책을 찾는 데 있다면 계약상 원래의 조건을 변경시키지 않고 놓아두는 것은 명백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Heo Kwang - Uk, 2005; Huh Jae - chang 2005; Kim Son - Guk, 2003; Oh Hyon - Sok, 2016; Rimke, 2001; Shim Chong - Seok, 2007; Woo Kwang - Myung, 2014; Yoon Joo - Young, 2017; Zaccaria, 2004).

V. 재협상 및 계약변경 관련 법리와 규정이 주는 시사점

앞서 국제장기상거래 계약의 재협상과 계약변경에 관한 주요국 및 몇 가지 주요한 국제협약과 계약법원칙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주요국의 국내법 상 시사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통법계와 대륙법계 국가들은 본래 고전적 로마법과 중세시대의 교회법의 전통을 이어 받아 오랜 기간 계약엄밀 준수원칙 또는 계약신성원칙을 고수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7세기를 지나면서 점차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불거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은 아니지만 예견불능 등 몇 가지 중요한 성립요건을 전제로 하여 계약 당시보다 극도로 부담스러운 경제적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정변경원칙을 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사정변경의 법리와 규정을 자세히 고찰해보면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 관련 규정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우선 용어의 표현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하드쉽 또는 사정변경의 정의 및 성립요건, 그리고 법적효과 등에 관한 법리나 규정이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국내법의 하드쉽 또는 사정변경 관련 규정은 아직도 국제무역의 니즈(needs)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러한 사실은 주요국들의 국내법상 불거항력 또는 이행불능의 법리나 규정의 경우 훨씬 더 많은 동질성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요국의 국내법상 사정변경의 법적효과 특히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관한 법리와 규정 및 판례들을 기초로 보통법계와 대륙법계 국가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보통법계 국가들의 경우 계약목적좌절 법리 또는 상업적 실행불능의 법리를 통해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원칙을 어느 정도 수용하

고 있다. 그러나 계약이행을 위한 비용부담이 극도로 커진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을 구제해주지 않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이 당해 계약의 재협상과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규정도 확실하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법계 국가에서 이러한 법리와 법원의 입장은 이미 당해 계약체결 시 그러한 사태를 감안하였을 것이라는 전통적인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법계 국가들의 경우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해 온 판례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동 원칙의 적용을 매우 꺼려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둘째, 독일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세계1차대전과 2차대전 당시 극심한 경제적 불안을 겪은 국가들로서 행위기초상실법리 또는 그와 유사한 법리를 일찍부터 정립하여 두 당사자 간에 경제적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경(radically changed)된 상황인 경우 재협상을 통한 계약변경 또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륙법계 국가 역시 동 원칙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넓은 의미에서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는 공공사업 목적의 행정계약에만 불예견법리를 적용하여 하드쉽을 인정해 왔었다. 이에 따라 일반상거래의 경우 지난 200년 이상 불거항력의 법리에 의거하여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융통성이 적은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프랑스 역시 지난 2016년 불예견법리를 모든 형태의 상거래에 적용하도록 자국의 민법에 정식으로 법전화함으로써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원칙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법개정으로서 향후 어떤 판례들이 나올지 주목할 만하다.

셋째, 실제로 판례들을 보면 동일한 법계에 속하는 국가들 간에도 법원은 다른 법률적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이다. 이는 각국의 사법문화가 서로 달라 사정변경원칙과 법리를 수용함에 있어서 주저하는 정도를 달리하는 전통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2. CISG, PICC 등 국제규범상의 시사점

1) CISG 적용상의 문제

계약의 재협상과 변경문제를 국제제정법인 CISG와 연관시켜 볼 때 CISG는 용어의 표현상 모호성 그리고 수 개의 중요한 보충이 필요한 갭(gap)의 존재여부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첫째, 무엇보다도 CISG는 계약엄밀준수원칙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이행장애 즉 “Impediment”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하드쉽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CISG를 적용한 계약의 재협상과 변경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 논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엇갈린 주장이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각국의 법원은 극심한 경제적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CISG 적용을 주저하면서 분쟁발생 시 자국법의 법리를 적용하려는 경향(homeward trend)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자국법 법리 적용경향은 국제통일법을 지향하는 CISG의 목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논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둘째, 앞서 앞의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논자들은 CISG를 적용하여 하드쉽 및 사정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ISG 제7조 1항에 명시된 신의성실준수 규정에 의거하여 내재적 갭(internal gap)을 보충함으로써 극심한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 시 재협상과 계약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한 이에 대해서도 반대론자들은 동 조항의 신의성실의무는 당사자들의 거래과정에서 계약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이지 재협상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재협상 및 계약변경을 위해 CISG 제7조 1항의 신의성실준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는 것은 향후 CISG의 자문회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2) PICC가 주는 시사점

한편 CISG와는 달리 PICC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은 물론 각각 하드쉽 조항과 사정변경 조항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PICC는 비록 강행법은 아니지만 계약의 재협상 및 변경에 관하여 매우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PICC는 몇 가지 작은 차이가 있지만 사정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이 성립된다면 재협상은 강제적(compulsory)이다. 즉 당사자 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바로 법원 또는 다른 제3자(중재판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때 법원 또는 제3자는 계약변경 또는 계약종료 등의 법적규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특히 PICC는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의 계약관계를 되도록 보존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물론 PICC의 초안자들의 하드쉽 관련 작업결과에 대해 일부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논자들은 계약엄밀준수원칙으로부터 일보 전진이며, CISG의 실패 이후 최초로 성공적인 산물로 인정하고 있다. PICC의 하드쉽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준거법으로서 PICC 선택 가능성이다.

무엇보다도 PICC는 그 지침에서 만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PICC의 관련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킬 경우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준거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PICC의 이러한 지침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다수의 계약에서 PICC를 준거법으로 선택하고, 법원과 중재판정부가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둘째, PICC와 CISG의 연계문제, 즉 CISG 제7조 2항의 활용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 시 CISG 제7조 1항에 규정된 신의성실준수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아직도 논자들 간에 의견이 나뉘지고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서 CISG 제7조 2항에 규정된 일반원칙

의 적용에 관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갭 보충문제(gap-filling)라고 볼 수 있다.

재인용하건대, 동 조항에서는 “CISG 중에 명백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CISG의 기초가 되어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CISG상에서는 어느 원칙이 CISG의 기초가 되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어떤 이슈(문제)가 CISG에 해당되는지 결정하기가 쉽지도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논자들 간에는 PICC가 CISG 일반원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부정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일반원칙으로 인정될 수 있거니와 이를 위해서는 CISG 제7조 2항에서 언급한 일반원칙을 PICC의 하드쉽 조항에 연계시킬 수 있다는 긍정론도 제기됨으로써 아직도 논리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긍정론에 입각하여 2009년 벨기에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은 아직 유일한 예이지만 CISG와 PICC의 적용역사상 특기할만한 판결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정론자들과 긍정론자들 간에 논쟁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 현장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VI. 결론 및 제언

모든 국제장기상거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단발적인 거래와는 달리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예기치 못했던 후발적인 통제불능의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사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행불능은 아니더라도 계약이행이 과도하게 또는 극심하게 부담스러운 이른바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이 발생함으로써 계약의 균형이 크게 손상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제장기상거래계약에서는 전통적인 계약엄밀준수원칙 또는 계약신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의 경우 당해 계약에 대한 재협상과 계약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조항을 삽입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항의 삽입은 계약자유원칙과 사정변경원칙이 굳게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원칙의 상위원칙으로서 계약 및 거래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해 볼 때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제투자 등 국제장기상거래는 당사자 간에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장기적인 거래를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해 계약의 융통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모든 국제장기상거래계약상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법의 해석과 적용을 함에 있어서 계약의 재협상 및 계약변경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경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제상거래계약에서 준거법은 필수적인 합의사항으로서 당사자들이 당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을 결정한다. 또한 분쟁발생 시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당해 계약을 지배하는 준거법을 적용한다. 한편 이 같은 특정국가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점과는 별도로 CISG 협약국들은 CISG 제1조에 의거 CISG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특정국가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됨과 동시에 CISG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재협상과 계약변경 가능성 여부가 각국의 국내법 및 법원의 수용성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주요국의 국내법 간에는 서로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거니와 법원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해석을 매우 좁게 하고 있다. 즉 1차적으로 특정국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을 인정받는 것이 불확실하고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CISG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즉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 문제 즉 재협상

과 계약변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CISG상 이른바 내재적 갭(internal gaps)의 존재에 대한 인정여부와 그러한 갭의 보충방안으로서 제7조 1항의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여부 및 제7조 2항과 관련하여 CISG가 PICC를 일반원칙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이다. 이 점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다. 다만 법원 관례의 경우를 보면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이라는 CISG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CISG의 현규정에 순응하는 입장이 대세이다.

이와 같이 주요국의 국내법상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관한 법리와 규정은 물론 CISG와 같은 국제통일법하에서 하드쉽 발생 시 법적용문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무역계약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계약담당자들 특히 국제투자계약 등 국제장기계약의 초안(설계)을 담당자들은 주요국의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관한 매우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제장기상거래계약에서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앞서 고찰해 본 바를 기초로 하여 몇 가지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 시 상대적으로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국가의 국내법을 준거법(governing law)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때 유념할 점은 당사자들의 계약상 재협상과 계약변경조항이 당해 국가의 강행법규(compulsory regulations)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경우 적용법(applicable law)에서 당사자들이 재협상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중재판정부가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먼저 인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고

중재판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계약변경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criteria)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 시 재협상과 계약변경 가능성에 있어서 준거법과 CISG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들의 의향이 분명하게 표현된 명시조항이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에 하드쉽의 정의, 성립요건, 법적효과에 관한 여러 가지 보충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충방안에는 PICC 관련 조항의 삽입, ICC의 2003년 하드쉽 조항의 삽입, 구속력이 인정된 관습과 관행(usages and practices)의 활용, UN/ECE 및 FIDIC 등이 발행한 표준계약서 활용, 다른 다국적기업들이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기계약서의 활용 등이 있다. 다만 이러한 보충 방안의 대상 및 내용이 준거법이나 CISG 규정에 저촉될 경우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판례분석 등 그에 대한 치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실제 계약서를 초안함에 있어서는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 시 법적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항력 조항과 하드쉽 조항을 별도로 설정하거나 또는 두 가지 조항을 포함시킨 통합조항으로 설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어느 정도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금번 연구에서는 지면제약으로 재협상 및 계약변경에 관한 법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관련 판례의 열거에 그치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 점이다. 또한 하드쉽에 의한 사정변경과 관련하여 한국의 법리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과제로 삼아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시켰다는 점도 부족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국제장기상거래계약의 재협상과 계약변경에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본 논문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진다.

References

- Agro, E. F. (2011), "The Impact of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 Figures", *Uniform Law Review*, 16(3), 719-733.
- Al Qurashi, Z. A. (2005), "Renegotiation of International Petroleum Agre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2(4), 270-273, 277-279.
- Al-Emadi, T. A. (2012), "The Renegotiating Clause in Petroleum International Joint Venture Agreements", *Oxford Student Legal Research Paper Series*, (4), 19-22.
- Aluminum Co. of America (ALCOA) v. Essex Group Inc., 499 F. Supp. 53 (W. D. Pa 1980).
- Arroyo, C. (2012), *Change of Circumstances under the CISG* (Master's Dissertation), Bucerius/WHU Master of Law and Business, 14-15.
- Atiyah, P. S. (1981),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8.
- Atiyah, P. S. (1995),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5th ed.), Clarendon Press, 244.
- Baranauskas, E. & P. Zapolskis (2009), "The Effect of Change of Circumstances on the Performance of Contract", *Jurisprudence*, 4, 199-206.
- Bedernam, D. J. (1988), "The 1981 London Declaration, Rebus Sic Stantibus and Primitivist View of the Law of N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2(1), 8.
- BGFI 16 January 1953, MDR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1953, 282.
- Bonell, M. J. (2002),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Sales Law", *R. J. T.*, (36), 343-351.
- Bonell, M. J. (2005),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3rd e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7-45.
- Cass. civ. Mar. 6, 1874, D. P. I. 179 (1876).
- Chowdhury, S. (1986),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in M. Bulajic et. al. (eds.), the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Ten Years of Implements, First Yugoslav International Seminar.
- Chung, G. (2017),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ustration Rule: 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Between Hong Kong - Interventionist Mechanism", *European Review of Private Law*, 25(1), 125-127, 131.
- Crystal, N. M. and F. Giannoni-Crystal (2010), "Contract Enforceability During Economic Crisis: Legal Principles and Drafting Solutions", *Global Jurist*, 10(3), 15-16.
- DiMatteo, L. A. (2015), "Contractual Excuse Under the CISG: Impediment, Hardship, and the Excuse Doctrines",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27(1), 262-264, 279-285.
- Gaz de Bordeaux case, 1916.
- Goode R. (1995), *Commercial Law*, Penguin Books., Middlesex, 140.
- Hamad, S. A. (2017), *Renegotiation Clauses in International Petroleum Contracts* (Master's Dissertation), Nicosia, Cyprus: Near East University, 5.
- Handy, C. R. (2019), "No Act of God Necessary: Expanding Beyond Louisiana's Force Majeure Doctrine to Impévision", *Louisiana Law Review*, 79(1), 266-272.
- Heo, Kwang-uk (2005). "Force Majeure and Hardship - Focusing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21(3), 230-237.
- Horn, N. (1985), "Changed in Circumstances and the Revision of Contracts in Some European Laws and International Law", In N. Horn (Ed.), *Adaptation and Renegotiation of Contracts in International*

- Trade and Finance*, Kluwer Law International, 25, 29.
- Huh, Jae-chang (2005), "A Study on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he Journal of Maritime Business*, (6), 165-167.
- ICC Award No.116, 1997.
- ICC Award No.7110, 1999.
- ICC Award No.7365, 1997.
- ICC Award No.7375, 1996.
- ICC Award No.8502, 1996.
- Iron Molybdenum Case Oberlandesgericht (Hanseatisches Overlandesgericht) U 167/95, CISG-on line 261.
- Jenkins, S. H. (1988), "Exemption for Nonperformance: UCC, CISG, UNIDROIT Principles – A Comparative Assessment", *Tulane Law Review*, 72, 2018.
- Kim, Son-Guk (2003), "A Comparative Study on Force Majeure and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provided in Major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Contract", *Business Law Review*, 13, 235-238.
- Klepac, L. (2017), *The Availability of a Hardship Defense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Master's Dissertation), Budapest, Hungary: Central European University, 25-27, 31-32.
- Kröll, S. (2004),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of Investment Contracts", *Oil, Gas & Energy Law Intelligence*, 2(1), 12-35.
- Kull, I. (2001), "About Grounds for Exemption from Performance under the Draft Estonian Law of Obligations Act (Pacta Sunt Servanda versus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Juridica Int'l*, 6, 45-46.
- Mazzacano, P. J. (2011), "Force Majeure, Impossibility, Frustration & the Like: Excuse for Non-performance – the Historical Origins and Development of an Autonomous Commercial Norm in CISG",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2), 6, 7-8, 11.
- McKendrick, E. (1995a), "Frustration and Force Majeure: Their Relationship and Comparative Assessment", In E. McKendrick (ed.), *Force Majeure and Frustration of Contract*, London, UK; Informa Law from Routledge, 27.
- McKendrick, E. (1995b), "The Regulation of Long-term Contracts in English Law", In J. Beatson and D. Friendmann (Eds.), *Good Faith and Fault in Contract Law*, Oxford, UK: Clarendon Pres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305, 322, 332.
- Nuova Fucinati v. Fondmetal International [199] Tribunale Civile di Monza R. G. 4267/88, CISG-on line 102.
- Oh, Hyon-Sok (2016), "A Study on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the International Sales Law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69, 192-195.
- Oh, Won-Suk and Yoon-Soo Sim (2005), "Outline of the Additions and Amendments in UNIDROIT Principles 2004",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25, 45-46.
- RG 03 February 1922, RGZ 103, 328 (Vigogne-Spinneri).
- Rimke, J. (2001), "Force Majeure and Hardship: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 with Specific Regard to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Pace University, Available from <https://www.cisg.law.pace.edu/cisg/biblio/rimke.html>, 206-208, 217-220, 222, 224, 239.
- Scafom International v. Lorraine Tube SA (2009) Hof van Cassatie C.07.0289.N, CISG-on line 1963.

- Schlechtriem, P. (1998),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London, UK; Oxford University Press, 618.
- Schmitthoff, C. M. (1980), "Hardship and Intervener Clauses", *Journal of Business Law*, 82-91.
- Schwenzer, I. (2008),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Law Review*, 39(4), 712.
- Shim, Chong-Seok (2007), "A Study on the PECL's Gap-Filling Role and Commercial Applicability u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17(2), 30-33.
- Sornarajah, M. (1988), "Supremacy of Renegotiations Clause in International Contract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5, 113.
- Suditu, A. (2011), "The Application of the Hardship Theory", The 6th Edi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European Integration Realities and Perspectives, *Legal Sciences*, 50-51.
- Tallon, D. (1987), "Article 79", In C. M. Bianca, and B. J. Bonell (Eds.),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Milan, Italia: Giuffrè, 592.
- Uribe, R. M. (2011), "Change of Circumstances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Contract Law - The Approach of The CISG, PICC, PECL and DCFR",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 15(2), 239, 244-246.
- Veneziano, A. (2010), "UNIDROIT Principles and CISG: Change of Circumstances and Duty to Renegotiate according to the Belgium Supreme Court", *Uniform Law Review*, 15(1), 137-151.
- Vital Berry Marketing NV v. Dira-Frost NV Rechtbank van Koophande, Hasselt AR 1849/94, CISG-online 371.
- Wehberg, H. (1959), "Pacta Sunt Servand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3(4), 775.
- Woo, Kwang-Myung (2014), "Case Study on the Change of Circumstance in CISG",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0(4), 217-218.
- Yoon, Chung-Weon (2004), *Trade Policy and Trade Law of the United States*, Paju, Korea: Jipmoondang, 40-46.
- Yoon, Joo-Young (2017), *A Study on the Legal Doctrines of Force Majeure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Contracts of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Doctoral Dissertation), Jeonju, Korea: Jeonbuk National University, 47, 49, 71-73, 74-76, 126-127, 130-131, 167-170, 172-174.
- Zaccaria, E. C. (2004), "The Effects of Changed Circumstanc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International Trade & Business Law Review*, 9(6), 141-142, 144, 146, 163-166, 168-171.